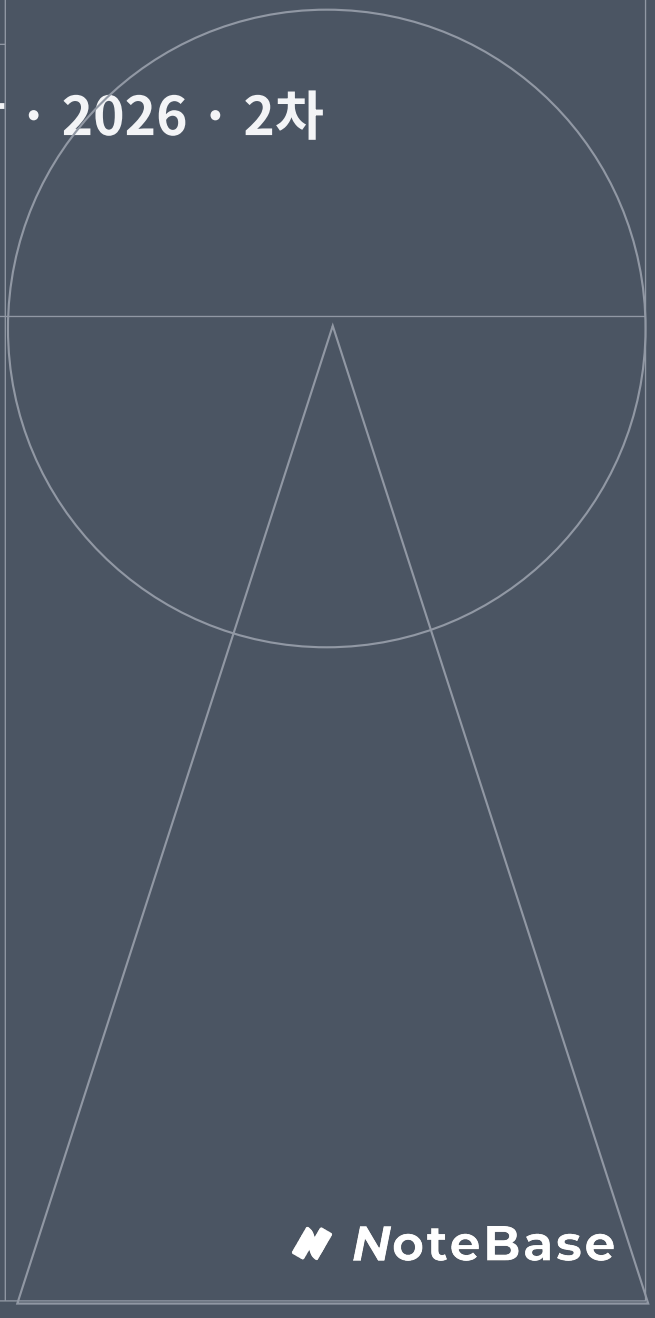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26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26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26 · 2차

문 1. 신용장통일규칙(UCP600)상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before’와 ‘after’는 선적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때 명시된 일자를 제외한다.

② 신용장에서 사용되는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과 같은 용어는 서류에 사용하도록 요구되지 않았다면 무시된다.

③ ‘from’과 ‘after’는 환어음 만기를 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때 명시된 일자를 포함한다.

④ 서류의 발행자를 표현하는 ‘first class’, ‘well known’, ‘qualified’와 같은 용어는 수익자를 제외하고, 모든 해당 서류 발행자가 사용할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환어음 만기를 정할 때 'from'과 'after'는 모두 **명시된 일자를 제외**한다. 기준일 다음 날부터 기간을 세므로, '포함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UCP 600 제3조에 따라 선적기간을 정하는 'before'와 'after'는 **명시된 일자를 제외**한다. 'before'는 그 날짜보다 앞선 날까지, 'after'는 그 날짜가 지난 뒤부터 선적할 수 있다는 뜻이다.

② O: UCP 600 제3조는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과 같은 표현을 **서류에 사용하도록 요구한 경우가 아니면 무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신용장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구체적인 이행기한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③ X: UCP 600 제3조에 따라 환어음 만기를 정하는 'from'과 'after'는 모두 **명시된 일자를 제외**한다. 따라서 '포함한다'를 '제외한다'로 고쳐야 한다. 예를 들어 6월 1일부터 30일 후 만기라면 6월 2일을 첫날로 세어 7월 1일이 만기가 된다. 선적기간을 정할 때의 'from'은 기준일을 포함하지만, 만기를 정할 때는 제외한다는 차이가 있다.

④ O: UCP 600 제3조에 따라 서류 발행자를 수식하는 'first class', 'well known', 'qualified' 등의 표현이 있으면 **수익자를 제외한 모든 발행자**가 해당 서류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수식어만으로 발행자의 특정 등급이나 자격을 별도로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2. 현대무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크루그먼(P. Krugman)이 제시한 산업 내 무역이론은 이종 산업 간이 아닌 동종 산업 내에서 서로 다른 제품들이 수출입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② 포스너(M. Posner)에 의해 체계화된 기술격차이론은 기술선진국과 기술모방국 사이에 존재하는 기술격차를 전제로 무역의 발생 원인을 설명한다.

③ 키싱(D. Keesing)이 제시한 연구개발이론은 기술격차이론을 확장하고 일반화한 이론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산품의 무역패턴 변화를 설명한다.

④ 린더(S. Linder)가 제시한 대표적 수요이론은 재화를 1차 산품과 2차 산품으로 구분하고, 2차 산품(공산품)은 한 국가의 수요구조에 의해 무역패턴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산품의 무역패턴 변화'는 **버논의 제품수명주기이론**에 해당한다. 키싱의 연구개발이론은 **연구개발 활동이 기술적 우위와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크루그먼의 산업 내 무역이론은 **제품차별화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같은 산업에 속한 제품이 국가 간에 서로 수출입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기업은 특정 제품을 대량생산하여 평균비용을 낮추고, 소비자는 무역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소비한다. 예를 들어 두 나라가 서로 다른 브랜드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② O: 포스너의 기술격차이론은 기술혁신국과 모방국 사이의 **기술격차와 모방에 걸리는 시간**을 무역의 원인으로 본다. 다른 나라에 신제품 수요가 생긴 뒤에도 그 나라가 아직 생산기술을 모방하지 못했다면 혁신국이 신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기술이 확산되어 모방국이 생산을 시작하면 그 기술격차에 따른 수출우위는 약해진다.

③ X: 기술격차이론을 확장하여 제품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공산품의 무역패턴을 설명하는 것은 **버논의 제품수명주기이론**이다. 신제품 단계에서는 혁신국에서 생산·수출하지만, 제품이 성숙하고 생산기술이 표준화되면 생산비가 낮은 국가로 생산이 이전되어 무역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키싱의 연구개발이론은 연구개발 활동이 기술혁신을 낳고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준다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선지의 이론과 학자를 '버논의 제품수명주기이론'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린더의 대표적 수요이론은 1차 산품의 무역은 주로 생산요소 부존의 차이로 설명하고, 공산품의 무역은 **국내 수요구조**에 주목하여 설명한다. 기업은 국내에서 충분한 수요가 있는 공산품을 개발·생산한 뒤, 비슷한 수요가 있는 해외시장으로 수출한다. 수요구조가 1인당 소득수준과 관련되므로 소득수준이 비슷한 나라 사이에서 공산품 무역이 활발해진다고 본다.

NoteBase

문 3. 국제경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원조와 다자주의에 의한 세계무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적인 통화협력을 증진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③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브레튼우즈협정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④ 세계무역기구(WTO)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틀 안에서 자유무역 질서를 확대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UNCTAD는 브레튼우즈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구가 아니라, **1964년 유엔총회 결의로 상설화된 기구**이다.
브레튼우즈협정에 따라 설립된 대표적인 기구는 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OECD는 회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다자적·비차별적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원조에 관한 회원국 간 협력도 이러한 목적에 포함된다.

② O: IMF는 **국제통화협력과 환율 안정**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국가들이 수출경쟁력을 높이려고 경쟁적으로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수지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국에 자금을 지원하여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을 돕는다.

③ X: UNCTAD는 개발도상국의 무역 확대와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이지만, 설립 근거를 브레튼우즈협정이라고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1964년 제1차 유엔무역개발회의가 개최되었고, 같은 해 **유엔총회 결의로 상설 정부 간 기구가 되었다**. 1944년 브레튼우즈회의에서 설립이 합의된 기구는 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지원이라는 목적과 기구의 설립 근거를 구별해야 한다.

④ O: WTO는 회원국 간 무역협정을 바탕으로 **무역장벽을 낮추고 공통된 무역규칙을 적용**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운영한다. 무역협상, 협정 이행 점검, 무역분쟁 해결을 통해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교역을 촉진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유지한다.

NoteBase

문 4. (가)에 들어갈 용어는?

(가)는 요소가격균등화정리를 검증하면서 고임금 수준의 국가와 저임금 수준의 국가가 자유무역을 할 경우, 고임금 수준의 국가의 실질임금은 하락하기 때문에 고임금 수준의 국가가 자국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① 코즈(Coase) 정리

② 립진스키(Rybczynski) 정리

③ 헥셔－올린(Heckscher-Ohlin) 제1정리

④ 스톨퍼－사무엘슨(Stolper-Samuelson) 정리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스톨퍼－사무엘슨 정리는 **재화의 상대가격 변화가 생산요소의 실질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노동이 상대적으로 희소한 고임금국에서는 자유무역으로 노동집약재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면 실질임금이 낮아지므로, 노동집약재에 대한 보호무역이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가) 스톨퍼ㅡ사무엘슨 정리: 두 재화와 노동·자본이라는 두 생산요소를 사용하는 모형에서, **어떤 재화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의 실질보수는 상승**하고 다른 요소의 실질보수는 하락한다. 실질보수는 받은 소득으로 재화를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뜻한다. 이 관계는 완전경쟁, 규모수익불변, 요소공급량 일정, 국내 산업 간 요소이동 가능, 두 재화의 생산 유지 등의 조건에서 성립한다.

지문의 고임금국은 이 모형에서 노동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자본이 풍부한 나라로 이해한다. 자유무역을 하면 저임금국의 노동집약재를 수입하면서 자국 노동집약재의 상대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한다. 반대로 노동집약재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상대가격을 높이면 노동의 실질보수가 상승할 수 있다. 지문의 보호무역 주장은 이러한 **노동자의 소득 보호** 효과를 가리킨다.

요소가격균등화정리는 일정한 조건에서 자유무역이 국가 간 요소가격을 같아지게 하는 관계를 설명한다. 스톨퍼ㅡ사무엘슨 정리는 그와 구별하여 재화가격 변화에 따른 국내 소득분배 효과를 설명한다. 헥셔ㅡ올린 제1정리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수출한다는 무역구조에 관한 정리이고, 립진스키 정리는 재화가격이 일정할 때 요소부존량 변화가 재화별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리이다. 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없는 등의 조건에서 당사자 간 협상으로 외부효과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가)에는 재화가격과 실질임금의 관계를 설명하는 스톨퍼ㅡ사무엘슨 정리가 들어가며, 이는 ④의 용어와 대응한다.

NoteBase

문 5. 문화적 차이를 분석한 홀(E. Hall)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배경문화는 시간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반면, 저배경문화는 시간이 돈이라는 개념이 강하다.

② 고배경문화는 개인적 공간을 중요시하는 반면, 저배경문화는 서로 어울리는 공간을 중요시한다.

③ 고배경문화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조직의 최고위층이 지는 반면, 저배경문화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조직의 최하위층인 실무자가 진다.

④ 고배경문화는 개인의 말이 보증서의 역할을 하는 반면, 저배경문화는 명문화된 문서나 법률적인 서류가 보증서의 역할을 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는 공간에 대한 두 문화의 특징을 반대로 서술했다. 고배경문화는 **서로 어울리는 공간**을 중시하고, 저배경문화는 타인의 침범을 꺼리는 **개인적 공간**을 중시한다.

선지별 해설

홀의 고배경문화는 의사소통에서 관계와 상황, 공유된 배경에 많이 의존하고, 저배경문화는 명시적으로 표현된 정보에 많이 의존한다. 다음 차이는 모든 개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라 모형이 제시하는 전형적 경향이다.

① O: 고배경문화는 일정 자체보다 인간관계와 상황에 맞추어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저배경문화는 시간을 아껴야 할 자원으로 보고 일정과 마감, 순차적인 업무 처리를 중시한다. 따라서 '시간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는 **시간 운용이 유연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며, 시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② X: 고배경문화와 저배경문화의 공간적 특징이 뒤바뀌었다. 고배경문화는 사람 사이의 가까운 거리와 함께 어울리는 공간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저배경문화는 **개인적 공간의 경계**를 중시하여 다른 사람이 그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고배경문화는 서로 어울리는 공간을, 저배경문화는 개인적 공간을 중시한다고 고쳐야 한다.

③ O: 모형에서 제시하는 책임 귀속의 전형적 차이이다. 고배경문화에서는 조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최고위층이 부담**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반면 저배경문화에서는 책임이 업무를 직접 수행한 하위층인 실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는 조직 내 책임을 어느 수준에서 지는가에 관한 문화적 비교이다.

④ O: 고배경문화에서는 지속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와 의무를 중시하므로 개인의 말이나 구두 약속이 보증 역할을 한다. 저배경문화에서는 약속의 내용과 책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문서와 법률적 서류**를 중시한다. 즉 약속을 뒷받침하는 주된 근거가 관계 속 신뢰인지 명시적인 문서인지가 다르다.

NoteBase

문 6. 비관세장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보조금은 수출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② 수입과징금은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연계하여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부과·징수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③ 수입할당제는 특정물품에 대해 일정 수량 이상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다.

④ 생산보조금은 특정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경쟁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관세와 연계하여'가 잘못된 표현이다. 수입과징금은 **통상의 관세와 별도로 추가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수입을 억제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수출보조금은 정부나 공공단체가 **수출을 조건으로 지원**하여 수출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다. 직접적인 지원금 지급이나 간접적인 비용 지원으로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촉진한다.

② X: 수입과징금은 특정 수입물품에 일정액이나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제도이다. 다만 '관세와 연계하여'가 아니라 **통상의 관세와 별도로 추가 부과**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관세율 자체를 조정하는 것과 구별되며, 추가 부담으로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높아져 수입수요가 감소한다.

③ O: 수입할당제는 특정 물품에 대해 허용할 수입량의 상한을 정하고 **그 한도를 넘는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제도이다. 가격에 부담을 더하는 수입과징금과 달리 수입수량을 직접 제한한다.

④ O: 생산보조금은 정부나 공공단체가 국내 생산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수입경쟁산업에 지급하면 생산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 국내 생산이 늘어나고 수입품을 대체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수출 여부를 조건으로 하는 수출보조금과 달리 **국내 생산을 지원**한다.

NoteBase

문 8. 니커보커(F. Knickerbocker)의 과점적경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점 기업들은 한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면 다른 기업들도 해외 직접투자에 나서는데, 이는 밴드왜건효과(bandwagon effect)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② 후발기업들의 목표는 이익 극대화보다는 경쟁기업과 같은 속도로 성장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있다.

③ 동일 산업 내 다수의 기업이 단기간에 동일한 국가에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④ 선도기업들의 최초 투자 동기를 제품차별화 전략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과점적 경쟁이론은 경쟁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응하는 **후발기업의 추종 투자**를 설명한다. 선도기업이 왜 처음 해외투자를 시작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으므로, 그 동기를 제품차별화 전략으로 설명한다는 서술은 부적절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과점시장에서는 소수 기업이 서로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려 하면 경쟁기업들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해외투자에 나선다. 이러한 **경쟁기업을 따라 투자하는 동조적 행동**은 밴드왜건효과와 연결된다.

② O: 후발기업의 추종 투자는 선도기업만 새로운 시장 기회나 경쟁우위를 얻는 것을 막으려는 방어적 행동이다. 경쟁기업의 성장에 보조를 맞추어 **상대적인 경쟁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있다. 이는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개별 투자의 이익 극대화보다 경쟁상 지위의 유지를 강조한다는 의미이다.

③ O: 한 기업이 특정 국가에 진출하고 같은 산업의 경쟁기업들이 잇따라 그 국가에 투자하면, **같은 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특정 국가와 짧은 기간에 집중**된다. 과점적 경쟁이론은 이러한 투자 집중 현상을 기업 간 상호의존과 추종 행동으로 설명한다.

④ X: 과점적 경쟁이론의 설명 대상은 **선도기업의 투자에 대응하는 후발기업의 투자 동기**이다. 선도기업이 최초로 해외투자를 시작한 이유 자체는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최초 투자 동기를 제품차별화 전략으로 설명한다'는 부분은 '후발기업의 추종 투자를 경쟁적 균형 유지로 설명한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9. 환율변동에 따라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이나 채무가 거래시점의 환율과 상이한 환율로 결제될 때 발생하는 위험은?

① 거래적 환위험
② 경제적 환위험
③ 환산적 환위험
④ 회계적 환위험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외화로 받을 돈이나 갚을 돈이 정해져 있어도, 결제할 때 환율이 달라지면 자국통화로 환산한 수취액이나 지급액이 변한다. 이처럼 **이미 성립한 외화 채권·채무의 결제**에 따르는 위험이 거래적 환위험이다.

개념 구분

거래적 환위험: 외화표시 채권·채무가 발생한 뒤 결제되기까지 환율이 변하여, 실제 수취액이나 지급액의 자국통화 가치가 달라지는 위험이다. 문제의 '거래시점의 환율과 상이한 환율로 결제'가 결정적인 단서이다. 예를 들어 달러로 수출대금을 받기로 한 기업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같은 달러 금액을 받아도 원화로 환산한 수취액이 줄어든다. 핵심은 **외화 금액이 같아도 결제금액의 자국통화 가치는 달라진다**는 점이다.

경제적 환위험: 환율변동이 제품의 가격경쟁력과 매출·비용 등에 영향을 주어 미래 영업현금흐름이나 기업가치를 변화시키는 위험이다. 이미 확정된 특정 외화 채권·채무의 결제에 한정되지 않고, **앞으로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환산적 환위험·회계적 환위험: 외화로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자국통화로 환산할 때 환율변동으로 재무제표상 금액이 달라지는 위험이다. 회계적 환위험은 환산적 환위험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쓰인다. 문제에서 묻는 실제 채권·채무의 결제와 구별되는 기준은 **재무제표의 통화 환산**이다.

NoteBase

문 10. 다음은 무역계약의 일반조항에 대한 설명이다. (가), (나)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는 계약서 중의 일부 조항이 어떠한 이유로 무효화되더라도 당해 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조항이며, (나)는 매수인이 제시한 디자인, 상표 등에 따라 매도인이 생산 및 인도한 물품이 제3자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이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① (가): Severability Clause, (나): Infringement Clause

② (가): Severability Clause, (나): Non-Waiver Clause

③ (가): Performance of Guarantee Clause, (나): Non-Waiver Clause

④ (가): Performance of Guarantee Clause, (나): Infringement Clause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일부 조항의 무효가 계약 전체의 무효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분리가능조항(Severability Clause)**이다. 매수인이 제시한 디자인·상표 등에 따라 생산한 물품의 권리침해에 대해 매도인을 면책하는 것은 **권리침해조항(Infringement Clause)**이다.

빈칸별 해설

(가) Severability Clause: 분리가능조항은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정하는 조항이다. 무효인 부분을 나머지 계약과 분리하여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므로, 지문의 '일부 조항이 무효화되더라도 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에 대응한다.

(나) Infringement Clause: 권리침해조항은 특허권·상표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의 책임을 정한다. 지문에서는 **매수인이 제시한 디자인·상표 등에 따라 생산·인도하여 발생한 권리침해**에 대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면책을 판단하는 핵심은 침해가 매수인의 지정 내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Non-Waiver Clause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가 지연되었다고 해서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 권리불포기조항이므로, 이와 구별된다.

(가)에 Severability Clause, (나)에 Infringement Clause를 연결한 조합은 ①이다.

NoteBase

문 11.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522)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류와 추심지시서는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으로 직접 송부하거나, 다른 중개은행을 통해 송부될 수 있다.

② 은행은 화환추심과 관련된 물품에 대하여 특별한 지시를 받은 경우, 물품의 보관, 물품에 대한 보험을 포함하여 지시받은 대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③ 추심이 장래의 확정일 출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하고, 추심지시서에 상업서류는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경우, 서류는 오직 그러한 지급에 대해서만 인도되고, 추심은행은 서류 인도의 지연으로 기인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은행은 접수된 서류가 외관상 추심지시서에 기재된 대로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되거나 기재된 것과 다른 서류에 대하여 지체없이 전신으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다른 신속한 수단으로 추심지시서를 송부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물품의 보관·보험에 관한 **특별한 지시만으로 은행에 조치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은행은 각 사안에서 해당 조치에 동의한 경우에만, 동의한 시기와 범위에서 조치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URC 522 제5조 e항은 서류와 추심지시서의 **직접 송부와 중개은행을 통한 송부를 모두 허용**한다. 추심의뢰은행이 반드시 추심은행에 직접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X: URC 522 제10조 b항에 따르면, 은행은 특별한 지시를 받아도 화환추심 관련 물품의 보관·보험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은행은 **각 사안에서 조치에 동의한 경우에만** 동의한 시기와 범위에서 조치한다. 따라서 '지시받은 대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표현은 은행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URC 522 제7조 c항에 따르면, 장래의 확정일에 지급되는 환어음이라도 추심지시서가 지급인도조건(D/P)을 명시하면 **실제 지급과 상환으로만 상업서류를 인도**한다. 인수는 만기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인수만으로 서류를 내줄 수 없다. 이 조건에 따라 서류 인도가 지연되어 발생한 결과에 대해 추심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O: URC 522 제12조 a항은 은행이 접수한 서류가 **외관상 추심지시서의 목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누락되거나 목록과 다른 서류가 있으면 추심지시서를 보낸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전신으로, 불가능하면 다른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는 목록과의 대조 의무이며, 제12조 c항에 따라 서류를 더 심사할 의무는 없다.

NoteBase

문 1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상 대금의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정하여지는 경우에, 의심이 있는 때에는 총중량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매수인이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영업소에서 매도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③ 매도인은 계약체결 후에 자신의 영업소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금지급에 대한 부수비용의 증가액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대금의 지급과 상환하여서만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는 조건으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

정답 4번

①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정해지고 그 기준에 의심이 있으면, 총중량이 아니라 **순중량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56조
제56조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정하여지는 경우에,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순중량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다른 특정한 지급장소가 없으면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지급한다. 다만,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지급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57조 제1항
다른 특정한 지급장소에 관한 의무가 없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하여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 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

③

계약체결 후 매도인의 영업소 변경으로 발생한 **대금지급 부수비용의 증가액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57조 제2항
매도인은 계약 체결 후 자신의 영업소 변경으로 발생한 대금지급 부수비용의 증가액을 부담한다.

NoteBase

④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면, 매도인은 **대금지급과 상환하여서만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교부한다는 조건으로 발송**할 수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58조 제2항
계약에 물품 운송이 포함되면, 매도인은 대금 지급과 상환하여서만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는 조건으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

NoteBase

문 13.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손해방지비용은 손해방지의무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특약이 없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ㄴ. 손해방지비용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지급한 비용뿐만 아니라 제3자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ㄷ. 손해방지에 성공했는지 여부가 아닌,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에 의하여 생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지출인지 여부가 손해방지비용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이다.
ㄹ. 손해방지행위는 근본적으로 보험자를 위한 것이므로 손해방지비용이 합리적으로 지출되었다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는 그 초과금액을 보상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3번

ㄱ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은 **별도의 특약이 없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상법 제680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91.12.31>

ㄴ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사용인 등이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이다. 이들과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지출한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680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91.12.31>

NoteBase

ㄷ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가 담보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이다. 합리적인 손해방지조치를 취했다면 실제로 손해방지에 성공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상법 제680조 제1항 또는 위 보통약관 제5조, 제16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에도 그 때부터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는 생겨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위 규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ㄹ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익하게 지출한 비용은 **손해보상액과 합하여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상법 제680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91.12.31>

NoteBase

문 14. 킨들버거(C. Kindleberger)가 제시한 독점적 우위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품시장의 불완전성에는 제품차별화, 특수한 마케팅 기술, 재판매가격유지제도가 있다.

② 규모의 경제에는 수직적 통합요인으로서의 내부경제, 수평적 통합요인으로서의 외부경제, 관리가격이 있다.

③ 요소시장의 불완전성에는 특허 및 비공개기술, 기술획득 및 자본조달상의 우위, 경영자 능력의 차이가 있다.

④ 정부의 규제에는 조세 및 관세, 금리 및 환율정책, 특정산업의 수출입 규제가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는 내부경제와 외부경제의 통합 방향을 뒤바꾸었다. 킨들버거의 구분에서 **내부경제는 수평적 통합**, **외부경제는 수직적 통합**과 연결되며, 관리가격은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제품시장의 불완전성**에 속한다.

선지별 해설

독점적 우위이론은 외국기업이 현지기업보다 불리한 여건에서도 해외에서 사업을 하려면 이를 상쇄할 기업의 우위가 필요하다고 본다. 킨들버거는 그 원천을 제품시장과 요소시장의 불완전성, 규모의 경제, 정부 규제 등에서 찾았다.

① O: 제품차별화와 특수한 마케팅 기술은 소비자가 특정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게 하여 경쟁제품으로의 대체를 어렵게 한다. 재판매가격유지제도는 생산자가 유통업자의 재판매가격을 정하거나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격경쟁을 제한한다. 따라서 이들은 **제품의 판매와 가격경쟁에서 나타나는 불완전성**에 해당한다.

② X: 킨들버거의 구분에서 내부경제는 **수평적 통합**의 유인이고, 외부경제는 **수직적 통합**의 유인이다. 같은 생산단계의 활동을 확대·통합하면 생산규모가 커져 고정비를 더 많은 생산물에 분산하는 등의 내부경제를 얻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생산단계를 연결하는 수직적 통합은 원료 공급·생산·판매 사이의 연계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기업 안에서 실현하게 한다. 또한 관리가격은 기업이 시장지배력 등을 바탕으로 설정·유지하는 가격으로,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제품시장의 불완전성에 속한다.

③ O: 특허 및 비공개기술은 경쟁기업이 같은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기술획득과 자본조달의 우위, 경영자 능력의 차이도 기업마다 이용할 수 있는 생산자원과 그 활용 능력을 달라지게 한다. 이처럼 **기술·자본·경영능력에 대한 접근과 이용 조건의 차이**는 요소시장의 불완전성에 해당한다.

④ O: 조세·관세, 금리·환율정책, 특정산업의 수출입 규제는 기업의 비용과 자금조달 조건, 해외시장 접근 조건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정부 개입으로 기업 간 경쟁조건이 달라지면 특정 기업이 상대적인 우위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 규제로 발생하는 시장의 불완전성**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5. Incoterms® 2020의 CIP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에서 발생한 양하비를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상환받을 권리가 없다.

②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을 위하여 후속되는 운송인이 사용되는 경우, 위험은 매도인에 의하여 선택된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된다.

③ 매도인은 매수인과 합의하여 ICC(C)나 이와 유사한 더 낮은 수준의 담보조건으로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그가 요청하는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이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도인의 비용으로 가능하다면 협회전쟁약관, 협회동맹파업약관, 기타 그와 유사한 약관에 의하여 부보하는 등의 추가 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추가 보험은 매도인이 마련하더라도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이 기본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의무와 매수인의 요청에 따른 추가 보험의 비용 부담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매도인이 **운송계약에 따라 부담한 목적지 양하비**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 합의가 없으면 매수인에게 따로 상환받을 수 없다. 양하는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내리는 작업이다. 다만 목적지의 모든 양하비가 항상 매도인 부담인 것은 아니며, 운송계약상 매도인 부담에 포함되지 않은 양하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② O: 여러 운송인이 이어서 운송하고 별도의 인도 장소나 지점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멸실·훼손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부담하더라도 위험까지 목적지 도착 시점에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③ O: CIP의 기본 보험 담보수준은 협회적하약관 ICC(A) 또는 이에 준하는 담보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합의하면 더 낮은 담보수준**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ICC(C) 또는 이에 준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담보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④ X: Incoterms® 2020 CIP의 A5에 따르면, 매수인이 요청하고 매도인이 요구하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담보를 구할 수 있다면 매도인은 전쟁·파업 위험 등에 대한 추가 보험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그 비용은 **매수인 부담**이므로 '매도인의 비용으로'를 '매수인의 비용으로'로 고쳐야 한다. 해당 위험이 기본 적하보험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같은 담보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는 없다.

NoteBase

문 1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상 물품의 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하여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ㄴ.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그 부적합이 위험 이전 후에 판명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서면에 의한 계약에 합의에 의한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합의 변경될 수 없지만,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신뢰한 한도까지는 그러한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ㄹ.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2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정답 1번

ㄱ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하여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6조
제26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하여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ㄴ

매도인은 **위험 이전 당시 존재한 부적합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명되더라도 책임을 진다**. 부적합이 드러난 시점이 늦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36조 제1항
매도인은 위험 이전 당시 존재한 물품의 부적합에 대해, 그 부적합이 위험 이전 후에 판명되더라도 계약과 협약에 따라 책임을 진다.

NoteBase

ㄷ

서면계약에 서면으로만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합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신뢰한 한도에서는 서면변경 약정을 원용할 수 없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9조 제2항
서면계약에 변경·종료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합의 변경·종료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신뢰한 한도에서는 그 약정을 원용할 수 없다.

ㄹ

부적합 통지는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별도의 **2년 제한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로 교부된 날부터** 기산하며, 계약상의 보증기간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39조 제1항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부적합의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않으면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잃는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39조 제2항
매수인에게 물품이 현실로 교부된 날부터 늦어도 2년 내에 부적합 통지를 하지 않으면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잃는다. 다만, 이 기간제한이 계약상 보증기간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이다.

NoteBase

문 17. 신용장통일규칙(UCP600)상 서류심사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에서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의 명세는 만약 기재되는 경우, 신용장상의 명세와 저촉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재될 수 있다.

② 서류는 신용장 개설일 이전 일자에 작성된 것일 수 있으나 제시일보다 늦은 일자에 작성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③ 신용장, 서류 그 자체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의 문맥에 따라 읽을 때의 서류상의 정보는 그 서류 또는 신용장상의 정보와 일치되어야 하며, 그들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④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주소가 어떤 요구서류에 나타날 때, 그것은 신용장 또는 다른 요구서류상에 기재된 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신용장에 기재된 각각의 주소와 동일한 국가 내에 있어야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일치되어야 하며'가 잘못되었다. UCP600은 서류상의 정보가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서로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표현의 차이 자체보다 문맥상 내용이 모순되는지를 심사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UCP600 제14조 (e)에 따라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에 물품·서비스·의무이행의 명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상의 명세와 저촉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신용장의 상세 명세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아도 내용이 모순되지 않으면 된다.

② O: UCP600 제14조 (i)는 서류의 일자가 **신용장 개설일보다 앞서는 것은 허용**하지만, 그 서류의 제시일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따라서 개설 전에 작성된 서류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지 않으며, 제시일 후의 일자가 기재된 서류는 허용하지 않는다.

③ X: UCP600 제14조 (d)에 따르면 신용장, 서류 자체 및 국제표준은행관행의 문맥에서 읽은 서류상의 정보는 그 서류, 다른 요구서류 또는 신용장상의 정보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문구를 똑같이 기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문맥상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일치되어야 하며'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로 고쳐야 한다.

④ O: UCP600 제14조 (j)에 따라 요구서류에 기재된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주소는 신용장이나 다른 요구서류의 주소와 같지 않아도 되지만, **신용장에 기재된 각자의 주소와 동일한 국가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가 적용되는 운송서류에서 개설의뢰인의 주소와 연락처가 수하인 또는 통지처 정보의 일부로 기재되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기재된 대로 표시해야 한다.

NoteBase

문 18. 공급사슬관리(SCM)의 최적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연전략(Delayed Differentiation)은 공통부품 중 차별화되어야 하는 제품의 제조 시점을 특정 시기까지 연기하는 방식이다.

② 협력적 수요예측 시스템(CPFR)은 유통업체인 A 사와 제조업체인 B 사의 수요예측치를 서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③ 공급자 재고관리(VMI)는 공급사와 수요사가 재고를 중복적으로 보유하는 대신 수요사의 재고를 공급사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④ 합의된 예측생성 프로세스(S&OP)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기업 외부의 공급업체와 협업하여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S&OP는 **기업 내부 부문 간 합의**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판매·운영계획이다. 외부 공급업체와의 협업을 중심으로 정의한 부분이 잘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지연전략은 공통부품이나 반제품을 먼저 준비하되, **제품별 차별화 공정을 수요가 구체화되는 시점까지 미루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공통 반제품을 만들어 두고 주문에 따라 색상이나 포장을 달리하면, 제품별 수요를 미리 잘못 예측하여 완제품 재고가 쌓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② O: CPFR은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등 거래 당사자가 **수요예측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조정**하여 계획과 재고 보충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A 사의 판매 현황과 수요예측을 B 사의 예측과 함께 검토하면, 각 기업이 서로 다른 예상에 따라 발주하거나 생산하는 데서 생기는 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

③ O: VMI에서는 수요사가 판매량과 재고 수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공급사가 수요사의 재고와 보충을 관리**한다. 공급사가 재고 상황을 파악하여 보충 시점과 수량을 결정하므로, 공급사와 수요사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채 각각 과도한 재고를 확보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④ X: S&OP는 판매·운영계획으로, **기업 내부의 영업·생산·재무 등 관련 부문이 합의**하여 수요계획과 공급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예상 판매량을 생산능력과 재고, 재무 목표에 맞추어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따라서 '기업 외부의 공급업체와 협업하여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식'은 '기업 내부 관련 부문이 협의하여 수요와 공급 계획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9. 선하증권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Third Party B/L은 송하인란에 신용장상의 수출상이 아닌 제3자가 송하인으로 표시되는 선하증권으로서 주로 중계무역에서 이용된다.
ㄴ. Intended Clause B/L은 선하증권 발행 시에 선박, 선적항 또는 양륙항이 확정되지 않은 증권이다.
ㄷ. Groupage B/L은 포워더가 같은 목적지로 가는 LCL 화물을 혼재하여 보낼 때 선사가 개별화주에게 보내는 선하증권이다.
ㄹ. Short B/L은 선하증권의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이 생략된 선하증권이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ㄷ의 Groupage B/L은 선사가 혼재화물 전체에 대해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증권이다. 개별 화주에게는 포워더가 **House B/L**을 발행하므로, 두 증권의 발행자와 발행 상대방을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Third Party B/L은 신용장상의 수출상인 수익자와 **송하인란에 기재된 자가 다른** 제3자 선하증권이다. 중계무역에서는 중계상이 수출상으로 거래하면서 실제 물품 공급자가 송하인으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주로 이러한 거래에 이용된다.

ㄴ. O: Intended Clause B/L은 예정표시 선하증권이다. 발행 시 선박, 선적항 또는 양륙항이 확정되지 않아 해당 사항을 **'예정된'이라는 의미의 intended로 표시**한다. 세 사항이 모두 미확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 X: LCL 화물은 컨테이너 한 개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이며, 포워더는 같은 목적지로 가는 여러 화주의 화물을 모아 혼재한다. 이때 Groupage B/L은 선사가 혼재화물 전체에 대해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 Master B/L이라고도 한다. 개별 화주에게 발행되는 것은 **포워더가 발행하는 House B/L**이므로, '선사가 개별화주에게 보내는'이라는 설명을 고쳐야 한다.

ㄹ. O: Short B/L은 약식선하증권으로, 선하증권의 필수 기재사항을 갖추면서 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뒷면의 인쇄약관을 생략**한 것이다. 생략되는 것은 이면약관이며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며, 이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0. 부정기선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Running Laydays는 우천, 파업 등 불가항력 사유 외에는 어떠한 원인도 관계없이 하역의 개시 시로부터 종료 시까지의 모든 날짜를 정박기간에 산입하는 방법이다.

② Dead Freight는 용선자가 계약한 화물량보다 적은 화물량을 선적하였을 때 선적하지 않은 화물량에 대하여 용선자에게 되돌려 주는 운임이다.

③ Gross Term Charter는 Net Term Charter와는 달리, 용선자가 적재·양륙의 모든 하역비뿐만 아니라 본선의 적재준비완료 시로부터 최종 양륙항에서의 양륙 종료 시까지의 일체의 항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④ Not Before Clause는 선박이 도착예정일보다 일찍 도착하는 경우, 부선료, 창고료 등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하역수배 등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본선이 선적준비완료예정일 이전에 도착하더라도 적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Not Before Clause는 선박이 일찍 도착해도 **약정한 선적개시일 전에는 용선자에게 적재 의무가 없도록** 하는 조항이다. 조기 도착으로 화물과 하역시설의 준비 일정이 어긋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Running Laydays는 연속정박기간으로, 별도의 제외 약정이 없으면 **우천·파업·기타 불가항력으로 하역하지 못한 시간도 산입**한다. 실제 작업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라 정박기간 개시 후의 시간을 연속하여 계산하므로, '불가항력 사유 외에는'이라는 예외를 두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② X: Dead Freight는 부적운임으로, 용선자가 약정한 화물량보다 적게 선적하여 생긴 운임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선적하지 않은 화물량에 대한 운임을 용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다.

③ X: Gross Term Charter는 적재·양륙의 통상적인 하역비와 항비를 **선주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용선자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Net Term Charter에 해당한다. 선지는 두 조건의 비용 부담 주체를 바꾸어 설명하였다.

④ O: Not Before Clause는 선박이 약정한 선적개시일보다 일찍 도착하더라도 **용선자가 그 날짜 전까지 적재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용선자는 약정일에 맞추어 화물·부선·창고와 하역 인력을 준비하므로, 조기 적재를 요구받으면 일정이 어긋나 부선료·창고료 등의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다. 이 조항은 약정일 이전의 적재 의무를 배제하여 용선자의 준비 일정을 보호한다.

NoteBase

문 21. 다음은 Incoterms® 2020의 FCA조건에 대한 내용이다. (가) ~ (다)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Delivery and Risk
"Free Carrier (named place)"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in one or other of two ways. First, when the named place is the seller's premises, the goods are delivered when they are loaded on the means of transport arranged by the buyer. Second, when the named place is another place, the goods are delivered when, having been loaded on the (가) means of transport, they reach the named other place and are ready for (나) from that seller's means of transport and at the disposal of the carrier or of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다).

① (가): seller's, (나): loading, (다): seller
② (가): seller's, (나): unloading, (다): buyer
③ (가): buyer's, (나): loading, (다): seller
④ (가): buyer's, (나): unloading, (다): buyer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매도인의 영업소가 아닌 장소에서 인도할 때는 매도인 측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가져와, **양하할 준비가 된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등의 처분에 맡긴다. 매도인 영업소에서 매수인이 마련한 운송수단에 적재하여 인도하는 경우와 구별한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가) seller's: 지정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이면 매도인이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인도한다. 따라서 물품이 실려 도착하는 운송수단은 **매도인 측 운송수단**이다. 뒤의 'that seller's means of transport'도 바로 이 운송수단을 가리킨다.

(나) unloading: 물품은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매도인 측 운송수단에서 **양하할 준비가 된 상태**로 인도된다. 양하를 마칠 때까지 매도인의 인도가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 반면 지정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이면 매수인이 마련한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해야 인도가 이루어지므로, 이 경우의 loading과 구별한다.

(다) buyer: FCA에서 물품을 인수할 운송인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지정하는 주체는 **매수인**이다. 매도인은 지정장소에서 그 사람이 물품을 인수할 수 있도록 처분에 맡긴다. 따라서 'nominated by the (다)'에는 buyer가 들어간다.

(가) seller's, (나) unloading, (다) buyer의 조합은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22. 해상운송에서 사용되는 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는 화주가 선사에 제출하는 운송의뢰서이자 화물의 명세가 기재되는 서류이다.

②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는 선적요청을 받은 선사가 선적요청서와 현품을 확인하고 송하인과 수하인에게 발행하는 서류이다.

③ 본선수취증(Mate’s Receipt)은 본선이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였음을 나타내는 수령증으로 해당 서류를 기초로 선하증권이 발행된다.

④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는 양륙지에서 선사가 수하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받고 운송인에게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서류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송하인과 수하인에게 발행'한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선적지시서는 선사가 **본선의 선장 또는 일등항해사 앞으로 화물의 적재를 지시**하는 서류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선적요청서는 화주가 화물의 명세와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선사에 제출하는 운송의뢰서이다. 화주가 **선복의 배정과 선적을 요청**하는 서류이며, 선사는 이를 바탕으로 선적지시서를 작성한다.

② X: 선적지시서는 선적요청을 받은 선사가 **본선의 선장 또는 일등항해사 앞으로** 해당 화물을 적재하도록 지시하는 서류이다. 송하인과 수하인 모두에게 발행하는 서류라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송하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사로부터 교부받아 본선에 제시할 수 있지만, 이는 서류를 전달하는 절차이며 선적지시를 받는 대상은 본선 측이다.

③ O: 본선수취증은 본선이 송하인의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일등항해사가 발급한다. 송하인은 이를 선사에 제시하여 선하증권을 발급받으므로, **화물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기초**가 된다.

④ O: 화물인도지시서는 양륙지에서 선사가 수하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받고 화물의 인도를 지시하는 서류이다. 구체적으로 본선 선장이나 보세창고 운영인 등 화물을 보관·인도하는 담당자에게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도록 지시**한다. 선적지시서가 출발지의 적재를 지시한다면, 화물인도지시서는 도착지의 인도를 지시한다.

NoteBase

문 23. 버클리(P. Buckley)와 카슨(M. Casson)의 시장내부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은 시장의 불완전성에서 오는 비효율적인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화를 시도한다.

② 기업이 해외 진출 전략으로서 라이선싱보다 해외직접투자를 선호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③ 해외직접투자에서 기술·브랜드 측면보다 생산 측면의 내부화를 강조하고 있다.

④ 내부화 이익에는 협상비용·계약비용·관세 등의 회피가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기술·브랜드 측면보다 생산 측면'이라는 설명이 뒤바뀌었다. 시장내부화이론은 특히 **기술·브랜드 등 무형자산의 내부화**를 중시하며, 이를 외부 기업에 제공할 때 발생하는 가치 평가의 어려움과 지식 유출 위험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내부화란 외부 기업과 시장에서 거래하던 활동을 동일 기업의 소유·통제 아래로 가져오는 것이다. 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에 협상이나 계약 이행에 비용이 많이 들면, 기업은 이를 내부에서 조정하여 거래비용을 줄이려 한다. 다만 내부 관리에도 비용이 들므로 **내부화의 이익이 그 비용보다 큰 경우**에 내부화를 선택한다.

② O: 라이선싱은 외부 기업에 기술이나 상표 등의 사용을 허용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이다. 이때 계약 조건을 정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비용과 기술 유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로 현지 자회사를 소유·통제하면 이러한 자산을 **기업 내부에서 이전·활용**할 수 있으므로, 라이선싱보다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③ X: 버클리와 카슨은 생산 활동 자체보다 **기술·브랜드 등 지식 기반 무형자산의 시장을 내부화**하는 데 특히 주목한다. 기술은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공개한 뒤에는 지식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술·브랜드 측면보다 생산 측면'은 '생산 측면보다 기술·브랜드 등 무형자산 측면'으로 고쳐야 한다. 해외 생산시설을 보유하는 것은 이러한 자산을 기업 내부에서 활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④ O: 외부 기업과 거래할 때 필요한 협상·계약을 기업 내부의 조정으로 대체하면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현지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면 완제품을 수출할 때 부담하는 관세를 피할 수 있다. 관세 회피는 이러한 생산·공급 방식의 변화에 따른 이익이며, 기업 내부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관세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24. 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바니(J. Barney)가 제시한 경영전략 분석 도구인 VRIO 모형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가치(Value)
ㄴ. 희소성(Rarity)
ㄷ. 상호작용(Interaction)
ㄹ. 기회(Opportunity)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VRIO는 자원의 **가치·희소성·모방 곤란성·조직화**를 평가한다. I는 상호작용이 아니라 모방 곤란성이고, O는 기회가 아니라 자원을 활용할 조직적 준비를 뜻한다.

보기별 해설

ㄱ. O: 가치(Value)는 자원이 기업의 **기회 활용이나 위협 대응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보유 기술로 생산비를 낮추거나 고객이 원하는 품질을 높일 수 있다면 그 자원은 가치가 있다.

ㄴ. O: 희소성(Rarity)은 가치 있는 자원을 **소수의 경쟁기업만 보유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자원에 가치가 있더라도 경쟁기업들이 널리 보유하고 있다면 그 자원만으로 경쟁우위를 얻기는 어렵다.

ㄷ. X: VRIO의 I는 상호작용(Interaction)이 아니라 **모방 곤란성(Imitability)**에 관한 기준이다. 경쟁기업이 같은 자원을 모방하거나 대체하려 할 때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평가한다. 가치 있고 희소한 자원이라도 쉽게 모방할 수 있다면 경쟁우위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ㄹ. X: VRIO의 O는 기회(Opportunity)가 아니라 **조직화(Organization)**에 관한 기준이다. 기업이 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실제 성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관리체계·보상체계 등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지는 가치 기준에서 검토하는 내용이다.

VRIO의 기준에 해당하는 보기는 ㄱ과 ㄴ이며, 이 조합은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5. 헤이그규칙 및 헤이그-비스비규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헤이그규칙은 하터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운송인의 과실을 상업과실과 항해과실로 구분하고, 상업과실과 감항성 확보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항해과실은 운송인의 면책으로 규정한다.

② 헤이그규칙은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화주가 화물 멸실이 운송인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면 운송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 헤이그-비스비규칙은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선하증권 기재의 증거력이 절대적임을 규정한다.

④ 헤이그규칙은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이 체약국의 항구로부터 개시된 경우 등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정답 4번

①

운송인은 **화물취급상의 주의의무와 발항 전·발항 당시의 감항능력 확보를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선장·선원 등 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관리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면책**을 인정한다.

헤이그규칙 제3조 제1항
운송인은 발항 전과 발항 당시에 선박의 감항성, 적절한 선원 배치·설비·보급, 화물 적재공간의 수령·운송·보존 적합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해야 한다.

헤이그규칙 제3조 제2항
운송인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송물의 선적·취급·적부·운송·보관·관리·양륙을 적절하고 주의 깊게 수행해야 한다.

헤이그규칙 제4조 제2항 (a)호
선장·선원·도선사 또는 운송인의 사용인이 항해나 선박관리에서 한 행위·과실·불이행으로 발생한 멸실·손상에 대해서는 운송인과 선박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NoteBase

②

운송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화물손해에 책임을 지우는 과실책임이 원칙이며, 그 책임을 임의의 면책약관으로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선장·선원 등의 항해과실에는 법정면책이 인정된다.

헤이그규칙 제3조 제2항
운송인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화물의 선적·취급·적부·운송·보관·관리·양하를 적절하고 주의 깊게 해야 한다.

헤이그규칙 제3조 제8항
과실이나 제3조의 의무 위반으로 생긴 화물손해에 대한 운송인 또는 선박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협약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경감하는 운송계약 약정은 무효이다.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귀속시키는 조항도 면책조항으로 본다.

헤이그규칙 제4조 제2항 (a)호
선장·선원·도선사 또는 운송인 사용인의 항해나 선박 관리상 행위·과실·불이행으로 발생한 멸실·손상에 대해서는 운송인과 선박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선하증권 기재의 절대적 증거력이란 **선의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소지인에게 운송인이 증권 기재와 다른 사실을 들어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하증권에 대한 법의 일부규정의 통일에 관한 국제협약(1968년 개정 의정서) 제1조 제1항
1968년 개정 의정서는 헤이그규칙 제3조 제4항에 선의의 제3자를 위한 반증금지 규정을 추가하였다. 개정 후 같은 항에 따르면, 선하증권은 제3항 (a)~(c)에 따라 기재된 화물이 운송인에게 수령되었다는 추정적 증거가 된다. 다만 선하증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체약국 항구에서 운송이 개시되는 경우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은 헤이그-비스비규칙이다. 헤이그규칙은 체약국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을 적용 기준으로 삼는다.

헤이그규칙 제10조
체약국에서 발행된 모든 선하증권에 협약을 적용한다.

헤이그-비스비규칙 제10조 (b)호
서로 다른 두 국가의 항구 사이 화물운송에 관한 선하증권은 체약국 항구에서 운송이 시작되는 경우에도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된다.

NoteBase